

● 환경부령 제949호

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1년 10월 22일

환경부장관 인

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 제목“(검정대행기관의 지정신청 등)”을“(검정대행기관의 지정 기준 및 방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2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기상측기를 검정할 수 있는 기관(이하 “검정대행기관”이라 한다)의 지정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일 것
2. 영 제7조 및 같은 영 별표 2에 따른 검정요원 및 검정설비를 갖추 것
3. 기상측기의 제작·수입 또는 설치를 업(業)으로 하는 자로부터 재정적 지원을 받지 않는 등 독립성을 갖추 것

제11조제2항(중전의 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중전의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1항”을 “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중전의 제3항) 중 “제1항”을 “제2항”으로, “영 제7조 및 같은 영 별표 2에 따른 지정요건에 적합한지”를 “제1항에 따른 지정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지”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중전의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3항”을 “제4항”으로 한다.

3. 영 제7조 및 같은 영 별표 2에 따른 검정설비를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서류
 - 가. 임대차계약서 사본 등 기상측기의 검정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무실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나. 기상측기의 검정에 필요한 장비를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보유 또는 공동활용·임차한 장비의 명세서 및 교정관리계획서를 포함한다)

별표 3의5 제2호다목부터 마목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다. 법 제12조의2제5항에 따른 형식승인·변경승인 기준을 위반하여 형식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한 경우	법 제12조의5제1항제3호	업무정지 2개월	업무정지 4개월	지정 취소
라. 법 제12조의4제1항 각 호에 따른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법 제12조의5제1항제4호	업무정지 2개월	지정 취소	
마. 법 제12조의4제1항에 따른 지정을 받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1년 이상 형식승인업무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12조의5제1항제5호	업무정지 2개월	업무정지 4개월	지정 취소

별지 제3호의3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4호서식 중 “시행규칙 제11조제3항”을 “시행규칙 제11조제4항”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형식승인대행기관의 지정 취소 및 업무 정지의 세부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종전의 별표 3의5 제2호다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 따라 처분을 받은 자가 이 규칙 시행 이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경우에는 별표 3의5 제2호다목부터 마목까지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한다.

기상측기검정대행기관 지정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40일
신청인	법인(단체)명	법인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사무실 주소		
	검정분야		
	업무개시일		

「기상관측표준화법」 제14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 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기상측기검정대행기관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기상청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법인의 정관 또는 단체의 규약 2. 「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령」 제7조 및 같은 영 별표 2에 따른 검정요원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령」 제7조 및 같은 영 별표 2에 따른 검정설비를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임대차계약서 사본 등 기상측기의 검정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무실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나. 기상측기의 검정에 필요한 장비를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보유 또는 공동활용·임차한 장비의 명세서 및 교정관리계획서를 포함한다) 4. 사업계획서	수수료 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사업자등록증 3. 부동산등기부등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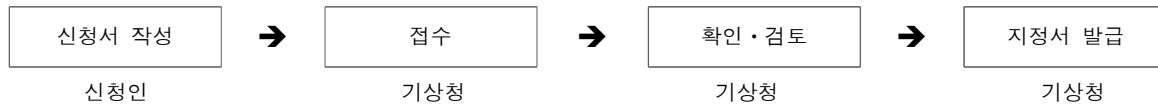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중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해당 서류의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기상측기 검정업무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검정대행기관의 지정 기준으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일 것, 기상측기의 제작·수입 또는 설치를 업(業)으로 하는 자로부터 재정적 지원을 받지 않는 등 독립성을 갖출 것 등으로 정하는 한편,

기상측기의 형식승인대행기관이 형식승인·변경승인 기준을 위반하여 형식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한 경우 또는 형식승인대행기관의 지정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등에 대하여 부과하는 행정처분을 종전에는 1차 위반 시 경고를 하던 것을 앞으로는 2개월의 영업정지를 할 수 있도록 정하여 행정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환경부 제공>